**양도양수통지서**

수신: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귀사”)

[ ](이하 "양도인”)는 [ ](이하 "양수인”) (와)에게 20[ ]년 [ ]월 [ ]일자로 아래 표 기재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양도대상자산"을 20[ ]년 [ ]월 [ ]일(이하 "양도양수일")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여, 이에 통지(이하 “본 통지”)합니다.

**양도대상자산**

|  |  |  |  |
| --- | --- | --- | --- |
| **작가명** | **상품명** | **양도 조각수****(단위:주)** | **금액 (단위:원)** |
|  |  |  |  |
|  |  |  |  |
|  |  |  |  |

1. 양도인은 귀사에 상기 양수도 관련 내역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로서 본 통지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 양도양수 통지에 대한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귀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인은 본 통지에 따라 귀사가 정하는 일자 또는 기간(매월 단위)에 양도인을 권리자로 하는 투자자 명부 기재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양도인**

성명 : (인)

주민번호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양수인**

성명 : (인)

주민번호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양도인/양수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방문 접수를 통한 양도양수 통지 또는 승낙의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이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2. 방문접수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에 가능합니다.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일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투자자 명부 변경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는 매월말까지의 변경분을 익월초에 진행하게 되므로, 양도양수통지서의 도착 또는 양도양수승낙서에 기재된 일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